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  
**대한약사회**

문서번호 대약 제2021-0817호

시행일자 2021. 7. 27.

수 신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참 조

제 목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안내

---

1.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에서는 약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연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약사연수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단,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8.31(화)까지 면제신청서와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면제대상임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가 반려되고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면허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교 육 명 : 2020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 2) 수강기간 : 2021.8.2(월) 09:00 ~ 31(화) 24:00 기간 내 이수 가능
- 3)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보충교육 안내문) 자료를 참고하여 보충교육 이수
- 4)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대한약사회 홈페이지  
(<http://www.kpanet.or.kr/main.jsp>) - 교육 -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와 함께 이메일  
([kpa-edu@daum.net](mailto:kpa-edu@daum.net)) 또는 팩스(02-585-7630)으로 8월 31일(화)까지 발송하면 증빙서류

검토 후 면제처리

- 약사연수교육 면제 대상 증빙서류(예시)

<b>면제</b> (제1항)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1호)	⇒ 휴직자: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퇴직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군 복무 중인자(2호)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 확인서
	학교에 재직 중인자(3호)	⇒ 교수 및 연구원: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4호)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휴업, 폐업, 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사자(5호)	⇒ 해외체류: 출입국사실확인서 ⇒ 휴·폐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 업무 변경: 재직증명서(비고란에 관리약사 아님을 명시)
	신규 면허취득자(6호)	⇒ 면허증 사본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7호)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약국, 의료기관의 폐업·이전 등으로 사실증명이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 근무이력 조회 결과 사본	

참고1)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규정

구 분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일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
4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근 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참고2) 약사 면허신고 반려 관련 근거 규정

약사법(2020.4.7. 공포)
-------------------

**제7조(약사·한약사 신고)**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기타 문의 : 1670-5877, (02)3415-7650, 7651

붙임 :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안내문 1부. 끝.

대한약사회장



담당 정책학술팀 김현승 차장

팀(국)장 : 정명찬 부국장/진윤희 국장

주소 우 06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서초3동 1489-3)

전화 02-581-1201~4

팩스번호 02-585-7630

e-mail kpa-edu@daum.net